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5,665,645	16,369,969
일반회계		510,286,787	15,308,604
특별회계		35,378,858	1,061,366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5,378,858	1,061,366
	의료급여특별회계	170,280	5,108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4,019,920	120,598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87,909	17,637
	지역발전특별회계	1,160,774	34,823
	발전소주변자원사업특별회계	472,634	14,1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68,467	125,054
	수질개선특별회계	22,533,940	676,01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64,934	67,94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55,06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